

의안번호	2211958
의 퇴 인	여기구 의원
회 답 일	2025. 9. 5.
추계번호	25A4235

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, 철강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,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설치 등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억 3,100만원, 2031년 7,1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4억 1,500만원(연평균 8,3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(안 제5조)	60	—	—	—	—	60	12
철강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 전망 예측(안 제7조) 및 철강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(안 제8조)	60	60	60	60	60	300	60
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(안 제9조)	11	11	11	11	11	55	11
합 계	131	71	71	71	71	415	83

주: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)	○ 정부는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2	안 제7조(철강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)	○ 정부는 매년 철강산업에 관한 경제적·산업적·국제적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전망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3	안 제8조(철강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)	○ 정부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의 조성 및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철강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4	안 제9조(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)	○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(제1항)	의무규정
5	안 제11조(녹색철강기술에 대한 지원 등)	○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철강사업자에게 녹색철강기술의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(제1항) - 1. 전기로를 활용한 저탄소 기술 등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의 브릿지 기술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관한 사업 - 2. 기존 전기로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기술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관한 사업 - 3.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관한 사업 - 4. 그 밖에 녹색철강기술의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관한 사업	재량규정
6	안 제12조(녹색철강기술의 조세 감면 등)	○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철강기술의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으로 인하여 일정 규모 이상 온실가스(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) 배출량을 감축한 철강사업자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있음(제1항) ○ 정부는 녹색철강기술을 활용하려는 철강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(제2항)	
7	안 제15조(특구 육성시책)	○ 정부는 녹색철강특구의 혁신적 발전을 위하여 녹색철강특구의 육성에 관한 시책(이하 “특구 육성시책”이라 한다)을 추진할 수 있음(제1항) ○ 특구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(제2항) － 1. 녹색철강특구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－ 2. 녹색철강특구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－ 3. 녹색철강특구에 입주하는 기업(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. 이하 “특구 입주기업”이라 한다)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－ 4. 특구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의 지식재산권 출원·관리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－ 5. 특구 입주기업의 전문인력 등의 양성에 관한 사항 － 6. 녹색철강특구의 체계적 개발 및 자원 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－ 7. 그 밖에 녹색철강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○ 정부는 특구 육성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함(제3항) ○ 정부는 특구 육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입지, 세제, 재정, 행정 등에 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함(제4항)	재량규정
8	안 제17조(민원의 신속 처리에 관한 특례)	○ 특구 입주기업이 철강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속히 처리하여야 하며,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－ 1.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3조에 따라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결과 통보 － 2.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의 면제 확인 － 3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8조에 따라 제출한 유해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성·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처리 - 4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4조에 따라 제출한 공정 안전보고서 심사 - 5. 그 밖에 특구 입주기업의 녹색철강기술 관련 연구개발·투자·제품생산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 사항	
9	안 제18조(녹색철강특구의 산업기반시설 설치)	○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철강특구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,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(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)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음 - 1. 녹색철강특구의 전력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- 2. 녹색철강특구의 용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- 3. 녹색철강특구에서 배출되는 폐수 및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- 4. 녹색철강특구에 연결되는 도로 - 5. 그 밖에 녹색철강특구에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	재량규정
10	안 제19조(녹색철강특구에 대한 지원)	○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철강특구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음 - 1. 철강산업 관련 투자를 위한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·운영 - 2. 녹색철강특구 부지의 조성, 의료시설·교육시설·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 - 3.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도입 - 4.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청정수소 생산시설의 도입 - 5.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도입 - 6. 그 밖에 녹색철강특구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, 생산시설 구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	재량규정
11	안 제20조(조세 감면에 관한 특례)	○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철강특구의 조성·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구 입주기업에 대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(제1항) ○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철강특구 내 수소 연료공급시설, 청정수소 생산시설 및 신·재생 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(제2항)	
12	안 제21조(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)	○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철강특구의 조성·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구 입주기업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음 1. 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.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. 「산지관리법」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. 「초지법」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5. 「농지법」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	재량규정
13	안 제22조(사용료 등 감면에 관한 특례)	○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입주기업에 대하여 「국유재산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의 사용료·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·대부료 및 감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공유재산의 사용료·대부료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	재량규정
14	안 제23조(토지의 매입 및 임대)	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철강특구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. 이 경우 부지매입의 요건 등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	재량규정
15	안 제26조(철강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지원)	○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사업자에게 철강핵심전략기술의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16	안 제29조(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지원)	○ 정부는 제27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및 제28조에 따른 철강전문기업(이하 “특화선도기업등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- 1.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등 - 2. 재정, 금융 등 행정적·기술적·재정적 지원 - 3. 연구개발, 인력양성, 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 - 4. 기술·인력·금융·경영·입지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·알선 - 5. 특허,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의 제공 - 6.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지도 및 자문 등 - 7. 그 밖에 특화선도기업등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	
17	안 제32조(실증기반의 확충)	○ 정부는 제34조에 따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력하여 실증시험·신뢰성평가·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·설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비용 등 재정적·행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 ○ 제1항과 관련하여 수요기업이 해당 시설·설비의 개방·운영계획, 구매의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음(제2항) ○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제2항에 따라 실증시험 또는 성능검증 등을 위하여 시설·설비를 개방하는 수요기업에 대하여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에도 불구하고 국유 및 공유의 시설, 설비, 기계, 기기 및 지식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·양여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18	안 제33조(실증시험·성능검증 등 촉진 및 지원)	○ 정부는 철강산업 분야의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에 개발된 기술이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시험·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(제1항) - 1. 실증시험, 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 구축·운영 - 2. 실증시험, 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제공기업에 대한 지원 - 3. 기술료 감면, 재정 부담비율 완화 등 기업 참여 촉진 - 4. 그 밖에 실증시험·성능검증 등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○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이 개발한 철강산업 관련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기술에 대하여 실증시험·성능검증 등을 지원하는 경우 정부는 해당 기업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
19	안 제34조(협력모델의 발굴)	○ 정부는 협력모델(철강산업 분야에서 수요기업 사이 또는 공급기업 사이의 수평적 협력, 수요·공급기업 사이의 수직적 협력 등 참여하는 기업 간에 상호이익을 위하여 구축한 협력체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20	안 제35조(협력모델에 대한 지원)	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간 상호협력을 촉진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·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 － 1. 공동기술개발 － 2. 공동기반구축 및 물류·보관 － 3.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·생산 등을 위한 투자 － 4. 신뢰성평가, 성능검증 등 적합성 평가 － 5.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확충 － 6. 신뢰성 보증 － 7. 제52조에 따른 규제개선 － 8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	재량규정
21	안 제37조(세제 지원 등)	○ 정부는 철강사업자가 사업재편을 위하여 일정한 시설투자 또는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및 과세이연 등 세제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 ○ 정부는 철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손비처리, 자산재평가, 과세이연, 법인세 감면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(제2항) － 1. 노후 또는 과잉설비(생산능력이 수요를 초과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)의 폐쇄·감축에 따라 자산 손실이 발생한 경우 － 2. 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, 분할 또는 양도·양수하는 경우 － 3. 고효율 또는 저탄소 설비로의 전환을 위하여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－ 4. 노후하거나 에너지효율이 낮은 설비를 양도하는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경우 - 5. 사업재편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	
22	안 제38조(재정 지원 등)	○ 정부는 철강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 - 1. 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철강사업자(이하 “사업재편 승인기업”이라 한다)의 연구개발 및 설비 투자에 대한 보조금 - 2. 고부가가치 또는 환경친화적 제품 개발을 위한 공공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- 3. 민간주도로 기업·대학·연구기관 등이 협업하여 수행하는 철강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- 4. 철강산업 관련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개선, 노후 설비의 해체 및 생산 방식의 전환에 대한 보조금 - 5. 지방에 대한 철강사업자의 핵심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입지보조금, 기반시설 연계 투자보조금 등 지원 - 6.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기 유동성 부족의 해소를 위한 자금 대출, 지급보증 등 금융지원	재량규정
23	안 제42조(철강산업을 위한 국가 전력망 및 용수 공급망 설치·확충)	○ 정부는 국가 전력망 및 용수 공급망 설치·확충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24	안 제43조(철강산업을 위한 친환경 원료 공급망 강화)	○ 정부는 친환경 철강 원료인 철스크랩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(제1항) - 1. 고품질 철스크랩의 회수, 선별, 가공 및 유통 기반시설의 구축 및 고도화 - 2. 철스크랩 품질 등급의 표준화 및 인공지능 기반 자동 검수 시스템의 확산 지원 - 3. 고품질 철스크랩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수입 다변화 및 전략적 비축 방안 마련 - 4. 철스크랩 거래 투명화를 위한 공정 거래 환경 조성 - 5. 철스크랩산업 종사자 및 기술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인력 양성 지원 - 6. 철스크랩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·세제·입지·행정 및 재정 등에 관한 지원	재량규정
25	안 제47조(철강산업 기	○ 정부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술개발사업의 추진)	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(제1항) 1. 글로벌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2.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사업 3. 철강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성능검증 및 실증센터 구축사업 4. 그 밖에 철강산업의 생태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개발사업	
26	안 제50조(국제협력 등의 지원)	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철강산업의 글로벌 파트너십 형성을 통하여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철강산업을 위한 통상협력, 해외시장 진출 지원, 전문인력 교류,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27	안 제54조(철강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)	○ 정부는 철강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(제2항) 1. 철강산업 인력의 전문역량 향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. 철강산업 인력의 연구개발 및 전략경영 관련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. 직업 훈련,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4.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유지 및 안정에 관한 사항 5. 퇴직근로자 등 철강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·지식의 활용,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항 6. 철강 제조 공정을 위한 작업장 환경의 개선,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7. 해외 고급 인력의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8. 그 밖에 철강산업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	재량규정
28	안 제55조(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)	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철강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(이하 “양성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음(제1항) 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29	안 제56조(해외 우수인	○ 정부는 철강산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·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력의 발굴·유치 및 특례)	유치를 위하여 해외 대학·연구기관·기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·분석을 할 수 있음(제1항) ○ 정부는 철강산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·유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2항)	
30	안 제57조(고용보조금의 지급)	○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강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철강사업자에게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	재량규정
31	안 제58조(국가철강산업진흥센터의 설치)	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철강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철강산업진흥센터(이하 “진흥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32	안 제59조(철강산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)	○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및 지속가능한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철강산업특별회계(이하 “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함(제1항)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조(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)	○	—
2	안 제7조(철강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)	○	—
3	안 제8조(철강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)	○	—
4	안 제9조(철강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)	○	—
5	안 제11조(녹색철강기술에 대한 지원 등)	X	○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—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정안과 관련하여 녹색철강기술에 대한 지원, 실증시험·성능검증 등 촉진 및 지원, 철강산업을 위한 친환경 원료 공급망 강화 등의 사업을 현재 수행하고 있는데, 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6	안 제12조(녹색철강기술의 조세 감면 등)	X	
7	안 제15조(특구 육성시책)	X	
8	안 제17조(민원의 신속처리에 관한 특례)	X	
9	안 제18조(녹색철강특구의 산업기반시설 설치)	X	
10	안 제19조(녹색철강특구에 대한 지원)	X	
11	안 제20조(조세 감면에 관한 특례)	X	
12	안 제21조(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)	X	
13	안 제22조(사용료 등 감면에 관한 특례)	X	
14	안 제23조(토지의 매입 및 임대)	X	
15	안 제26조(철강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지원)	X	
16	안 제29조(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지원)	X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7	안 제32조(실증기반의 확충)	X	○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－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정안과 관련하여 녹색철강 기술에 대한 지원, 실증시험·성능검증 등 촉진 및 지원, 철강산업을 위한 친환경 원료 공급망 강화 등의 사업을 현재 수행하고 있는데, 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18	안 제33조(실증시험·성능검증 등 촉진 및 지원)	X	
19	안 제34조(협력모델의 발굴)	X	
20	안 제35조(협력모델에 대한 지원)	X	
21	안 제37조(세제 지원 등)	X	
22	안 제38조(재정 지원 등)	X	
23	안 제42조(철강산업을 위한 국가 전력망 및 용수 공급망 설치·확충)	X	
24	안 제43조(철강산업을 위한 친환경 원료 공급망 강화)	X	
25	안 제47조(철강산업 기술개발 사업의 추진)	X	
26	안 제50조(국제협력 등의 지원)	X	
27	안 제54조(철강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)	X	
28	안 제55조(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)	X	
29	안 제56조(해외 우수인력의 발굴·유치 및 특례)	X	
30	안 제57조(고용보조금의 지급)	X	
31	안 제58조(국가철강산업진흥센터의 설치)	X	
32	안 제59조(철강산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)	X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□ 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수의 철강산업 관련 재정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, 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일부에 대해서만 추계함

○ 제정안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현행 재정사업은 다음과 같음

[표 2] 철강산업 관련 주요 재정사업 현황(산업통상자원부 소관)

(단위: 백만원)

제정안	세부사업 (내역)	회계기금 (소관)	2023 결산	2024 결산	2025 예산
안 제11조 (녹색철강기술에 대한 지원 등)	전기로제강공정 디지털화를 통한 고효율 조업기술 개발	기후대응기금	5,167	2,584	2,584
	철강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무탄소 연료전환 및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개발	기후대응기금	7,000	5,178	5,178
	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 개발(*철강분야)	기후대응기금	10,290	34,722	20,747
	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 술개발(수소환원제철공 정)	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	10,000	4,000	—
안 제33조 (실증시험·성능 검증 등 촉진 및 지원)	철강산업재도약기술개 발	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특 별회계	18,354	12,917	11,625
	소재부품기술개발(*철강 분야)	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특 별회계	33,799	39,850	40,700
	철강·금속디지털전환 (DX)실증센터구축	일반회계	—	2,800	2,240
안 제43조 (철강산업을 위한 친환경 원료 공급망 강화)	전기로제강공정 디지털화를 통한 고효율 조업기술 개발	기후대응기금	5,167	2,584	2,584

제정안	세부사업 (내역)	회계기금 (소관)	2023 결산	2024 결산	2025 예산
안 제47조 (철강산업 기술개발사업의 추진)	소재부품기술개발(*철강 분야)	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특 별회계	33,799	39,850	40,700
	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 개발(*철강분야)	기후대응기금	10,290	34,722	20,747
	전기로제강공정 디지털화를 통한 고효율 조업기술 개발	기후대응기금	5,167	2,584	2,584
	철강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무탄소 연료전환 및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개발	기후대응기금	7,000	5,178	5,178
	철강산업재도약기술개 발	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특 별회계	18,354	12,917	11,625
	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 술개발(수소환원제철공 정)	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	10,000	4,000	—
	철강·금속디지털전환 (DX)실증센터구축	일반회계	—	2,800	2,240
안 제50조 (국제협력 등의 지원)	국제부담금 (철강글로벌포럼)	일반회계	57	62	33
안 제54조 (철강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)	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(* 철강분야)	일반회계	1,500	1,000	1,500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과 사업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(안 제5조)

□ 비용추계 대상은 “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비용”으로 하며, 기본계획 수립 비용은 5년 주기 연구용역비로 함

○ 제정안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은 유사 연구용역 사례를 고려할 때 2027년에 6,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
－ 유사 연구사례로는 “EU 탄소국경제도 도입에 따른 철강산업 공급망 영향평가”(산업통상자원부, 2023년, 4,545만원), “철강산업 글로벌 탄소국경조정 대응전략 및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”(산업통상자원부, 2021년, 7,431만원) 등이 있음

□ 제정안에 따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6,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
[표 3]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
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 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(안 제5조)	60	—	—	—	—	60	12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철강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(안 제7조) 및 철강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(안 제8조)

□ 비용추계 대상은 “철강산업의 현황조사 및 관련 통계 작성에 따른 비용”으로 하며, 동 조사 및 통계 작성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수립을 지

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년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함

- 제정안의 조사 및 통계 작성은 유사 연구용역 사례를 고려할 때 매년 6,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함
 - － 유사 연구사례로는 “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및 지역단위 에너지, 기후변화 대응계획 조사 분석”(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, 2021년, 4,840만원), “2019 철강 산업경쟁력조사”(산업통상자원부, 2019년, 8,182만원) 등이 있음

□ 제정안에 따라 철강산업의 현황조사 및 관련 통계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
[표 4] 철강산업의 현황조사 및 관련 통계의 작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철강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(안 제7조) 및 철강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(안 제8조)	60	60	60	60	60	300	6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다.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(안 제9조)

- 비용추계 대상은 “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에 따른 비용”으로 하며, 관련 비용은 민간위원 회의참석수당 금액으로 함
 - 동 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수를 정원의 과반인 11명으로 하고, 위원회의 심의·의결 사항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
 - － 안 제9조제2항에 따르면,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
 - － 안 제9조제1항에 따르면, 위원회의 심의·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음
 1.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·시행,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2. 녹색철강기술의 선정 및 제외, 녹색철강기술의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, 조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
 3. 철강 제조 및 공급 등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4.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관계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

5.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세제 및 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
6.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철강산업과 관련된 특례에 관한 사항
7. 녹색철강특구의 지정·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
8.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한 인·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에 관한 사항
9. 철강핵심전략기술의 선정 및 제외, 철강핵심전략기술의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에 관한 사항
10. 제32조에 따른 실증기반 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
11.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협력모델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
12. 제42조에 따른 철강산업의 원활한 전력 수급과 용수 공급을 위한 국가 전력망 및 용수 공급망 설치·확충에 관한 사항
13. 제49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에 관한 사항
14. 제52조에 따른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
15.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
16. 그 밖에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민간위원 1인당 회의참석수당 단가를 25만원으로 할 경우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5년간 총 5,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
[표 5]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(안 제9조)	11	11	11	11	11	55	11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